

범선의구조및설비등에관한기준 주요 개정내용

1. 개정사유

- 현행 범선의 구조 및 설비 등에 관한 기준은 길이 24미터미만 범선(단동형)에 대하여만 규정하고 있으나 이를 다양한 구조의 범선 건조 추세 및 대형범선 도입에 대응하기 위함
- 길이 24미터이상 범선에 적용할 수 있는 규정을 수용하는 등 다동형 범선 및 대형 범선이 충분한 구조강도를 갖추도록 하여 범선 및 여객의 안전을 확보하고자 함

2. 주요 개정내용

- 가. 다동형범선에 대한 용어의 정의를 신설
- 나. 24미터미만 범선의 선체구조 및 강도에 대하여 내구시험만으로 확인하는 현행 규정을 유지하되 내구시험의 시간을 상향조정하여 범선이 충분한 구조강도를 가질 수 있도록 함
- 다. 다동형 범선의 각 선체간 연결부의 강도 등에 대한 근거규정을 신설함
- 라. 근해이상 항행 범선의 경우 복원성기준과 연계할 수 있도록 코밍 높이에 대하여 항행구역별로 세분화하여 규정함
- 마. 다동형범선에 적용할 수 있는 복원성기준을 정하고, 비교적 짧은 거리인 한정연해구역 이하를 항행하는 24미터미만 다동형범선에 대하여는 선체특성상 복원성이 우수한 점을 감안 복원성능 완화규정을 신설함

